

	<b>보도자료</b>	
<b>보도일시</b>	2021. 1. 6(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화3담당관	발 표 자 박재형 개인납세국장
배포 일자: 2021년 1월 6일	담당 과장 강상식 과 장 044) 204-3201 나항미 과 장 044) 204-2551
	담 당 자 강신웅 사무관 044) 204-3212 김희재 사무관 044) 204-2562

**법인사업자는 1.25까지 개인사업자는 2.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안전하게 신고하세요**

- (신고개요) 이번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법인사업자(103만 명)의 경우 1월 25일(월)까지, 개인사업자(665만 명)의 경우 2월 25일(목)까지 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하였습니다.
- (세정지원) 개인사업자 납부세액 감면<sup>1)</sup>·면제<sup>2)</sup> 등 세제지원과 중소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합니다.
  - 1)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
  - 2)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0백만 원에서 48백만 원으로 상향
- (사전안내)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 맞춤형 도움 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합니다.
  - \* ('19년 2기 확정) 97종, 88만 명 → ('20년 2기 확정) 98종, 97만 명(10%↑)
- (신고편의) 모바일 신고를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까지 확대 하고,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1544-9944)」 신고 서비스를 사업실적이 없는 영세사업자까지 추가 제공합니다.
  - \* 신고서식이 복잡한 영세용 재활용 면세 의제매입 관련 신고는 '21년 7월경부터 제공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별도 운영하지 않으니,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한 ‘모바일·홈택스 신고방법 동영상’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개요**

**법인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월 25일까지**

- (개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붙임1,2)

**| 신고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0. 7. 1. ~ '20. 12. 31.
	간이과세자	'20. 1. 1. ~ '20. 12. 31.
법인사업자		'20. 10. 1. ~ '20. 12. 31.

- 이번 신고 대상자는 768만 명\*으로, 지난해 동기 확정신고 인원(735만 명) 보다 33만 명(법인 7↑, 개인 26↑) 증가하였습니다.
  - \* 법인사업자 103만 명, 개인사업자 665만 명(일반 468만, 간이 197만)
- (직권연장)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전체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 한하여 신고기한을 '21. 2. 25.(목)까지 1개월 직권 연장합니다. (665만 명)
  - \* (근거법률)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 \*\* '21년 제1차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21. 1. 4.)
- 개인사업자는 연장된 기한까지 홈택스나 ARS·모바일 간편 신고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 \* '21. 1. 25.까지 환급 신고한 경우, 법정기한 내 지급 예정(15~30일 이내)
- 법인사업자는 기존대로 '21. 1. 25(월)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더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붙임3)
  - \* 홈택스 전자신고 : 1. 1. ~ 1. 25.(법인) / ~ 2. 25.(개인) 매일 06:00~24:00

## 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①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감면제도 시행

- (감면 신설) '20년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가 신설('20. 3. 23.) 되었습니다.(붙임4)
- (감면 대상)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 사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됩니다.

\* (사업자 기준) 사업자별 모든 사업장 공급가액 합산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감면 신청 화면 >

- (접속 경로)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클릭 → 경감·공제세액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작성하기' 클릭

● 경감·공제세액 (단위: 원)

항목	금액	세율	세액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18)	작성하기	0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19)	작성하기	0
합계	(20)	@	0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90-1)		작성하기	@

※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그밖의 경감·공제세액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② 개인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 (납부면제 추가)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을 '20년 한시적으로 상향(30→48백만 원)하여 적용('20. 3. 23.)합니다.(붙임4)
- (면제 대상 확대)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3천만 원 이상 4천8백만 원 미만, 감면배제업종(부동산임대·매매, 과세 유흥장소)이 아닌 간이과세자에 대해 납부세액을 면제합니다.

\* 사업장별로 기준금액 적용(감면배제업종 겸업 사업자 안분계산)

## ③ 중소기업 등에 환급금 조기지급 및 납세유예 적극 실시

- (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 (조기환급)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21. 1. 29.(금)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 법정지급기한인 '21. 2. 9.보다 12일 앞당겨 지급

#### | 지원 대상 |

중소 영세	① 직전연도 매출액 1,000억 원 이하 &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 불문)
혁신 지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⑤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피해 기업	⑥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⑦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 (일반환급) 영세사업자(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이하) 및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보다 10일 앞당겨 '21. 2. 15.(월)까지 지급하겠습니다.

- (납세유예)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붙임5)
- (신청방법)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접속 → ② 신청/제출 →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⑤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3.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신고도움자료 확대 제공

□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 특히, 이번 신고부터 사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세법해석 사례**」 탭\*(tab)을 추가하여 유권해석사례(32건)를 **제공**합니다.

\* 개별분석자료, 기본사항, 과거신고내역,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 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신고 변동 추세선·원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

□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내외부 과세자료, 현장정보 등을 분석하여, 업종, 규모, 업황 등 납세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97만 명의 사업자에게 추가 제공**합니다.(붙임6)

\* ('19년 2기 확정) 97종, 88만명 → ('20년 2기 확정) **98종, 97만 명(10%↑)**

#### | 분석유형별 주요 안내 항목 |

빅데이터	• (공통) 신용카드 소유자와 공제 신고 사업자 간 관계분석을 통해 타인 소유 카드에 대한 부당공제 혐의 추출 분석자료 안내
외부자료	•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 중개실적 자료 안내 •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 가맹점 매출자료 안내
과세정보 통합분석	• (전문직) 성형외과 지역별 평균 신용카드 매출(건당) 분석 자료 • (수의업) 반려동물 수입통관자료 분석을 통한 매출 성실신고 안내
현장정보	• 휴양지 레지던스 업무무관 자산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 동일한 신용카드 매입내역을 다수 사업자가 공제받아 추정된 사례 안내 • 유튜브 사업자의 PPL 및 간접광고 수익 성실신고 안내 • 건물신축업자 철거비용 토지 관련 매입세액 성실신고 안내 • 귀금속 등 기념품 취득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환전내역 매출 성실신고 안내

○ (신종 거래) 새로운 업종·거래 사업자가 **세무의무** 등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합니다.

유형	주요 안내 내용
해외직구 대행업	•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대상 대행수수료, 자가 사용 목적 수입물품 판매 등 매출누락 방지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생활형 숙박시설	• 유명지역 '한달 살기' 또는 '1년 살기'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운영과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app-거래 (플랫폼 거래)	• 쿠팡 등 인터넷쇼핑몰 사업자, 배달앱, 숙박앱, 골프부킹앱, 배달대행업 이용 사업자에 수수료 지급내역 등 매출 성실신고 안내
유사 PG 가맹업체	• 사업자임에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별도의 신용카드 결제대행 매출이 발생하여 매출 분산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수수료지급내역 안내
공유숙박	• 해외플랫폼을 통해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안내
SNS마켓 (블로그 등)	•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안내, 할인 등으로 현금결제 및 계좌이체를 유도한 후 신고누락 사례 안내
오픈마켓	• 오픈마켓 운영 사업자가 제출하는 실 판매자의 매출자료를 수집하여 건수 및 매출금액을 안내
국외 전자적 용역 제공업체	• 국외 전자적용역(app·게임·광고·클라우드컴퓨팅 등) 제공 거래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안내, 간편사업자에게 납세의무 안내 e-mail 발송

○ (업종별 안내) 과세기반, 외부자료 등을 종합 분석하여 업종·유형별 신고 시 **필수 고려사항**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업종	주요 안내 항목
도소매	• (매출) 일반의약품 등 약국 사업자 매출내역, 장애인보조기기 보조금 지급자료 • (매입)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매입내역 분석, 스크랩사업자 기납부자료
서비스	• (매출) 산림복지 전문업의 교육용역 제공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성실신고 안내 해외 앱스토어 통한 모바일 게임앱 매출 성실신고 안내
건설	• (매출) 산재보험 가입자료, 산림숲 조성 관련 임산물 공급 과세대상 안내 • (매입) 감정평가수수료 및 토지 관련 매입내역 부당공제
공통	• (매입) 금융자문·감정평가 수수료 매입 불공제, 과면세 겸업자 안분계산 • (기타) 부가세 감면신청 오류 안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성실신고 안내

□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시 알림창을 통해 「신고도움 서비스」에 바로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입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으므로, (붙임7)

\*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 세무대리인 > 수입납세자 정보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 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비대면(언택트) 신고 위주의 납세서비스 확충

###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로 「모바일」 신고서비스 개편

- 모바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이번 신고부터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하여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붙임8)
- 다만, 신고서식이 복잡한 영세율·재활용·면세·의제매입 관련 신고는 추가 개발 후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21년7월경)입니다.

#### < (중전) 모바일신고 대상자 >

구분	무실적	임대업	임대업 외	납부면제
과세유형	모든 무실적 사업자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이용요건		단일업종으로 ① 임대차 변동이 없는 자 ② 임차인이 1인 이하	단일업종으로 매출액만 있는 자	납부면제자 (임대 제외)

#### < (확대) 모바일신고 대상자 >

연번	세부 내용	대상자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신고(기한후신고 포함)	모든 사업자 (영세율·재활용·면세·의제매입 관련 신고 제외)
2	중전 모바일신고 대상자의 기한후신고	

- '모바일 신고요령 동영상'을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유튜브에 게시하였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모바일 신고서비스 이용방법 (예시 : 부동산임대) |

홈택스앱 접속	정기신고 선택	신고실적 입력	신고서 제출	접수결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홈택스 앱 실행</li> <li>2. 로그인</li> <li>3. 신고 메뉴 선택</li> <li>4. 신고 유형 선택</li> <li>5. 신고 기간 선택</li> <li>6. 신고 대상 선택</li> <li>7. 신고서 작성</li> <li>8. 신고서 제출</li> <li>9. 신고서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기신고 선택</li> <li>2. 신고 유형 선택</li> <li>3. 신고 기간 선택</li> <li>4. 신고 대상 선택</li> <li>5. 신고서 작성</li> <li>6. 신고서 제출</li> <li>7. 신고서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본정보 입력</li> <li>2. 입력서식 선택</li> <li>3. 매출계급계산서 입력</li> <li>4.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입력</li> <li>5. 기타 매출 입력</li> <li>6. 과세표준 명세 작성</li> <li>7. 매입세금계산서 입력</li> <li>8. 매입 신용카드 입력</li> <li>9. 전자세액공제 입력</li> <li>10. 차가감 납부환급세액</li> <li>11. 신고서 입력 완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고서 제출</li> <li>2. 신고서 확인</li> <li>3. 신고서 확인</li> <li>4. 신고서 확인</li> <li>5. 신고서 확인</li> <li>6. 신고서 확인</li> <li>7. 신고서 확인</li> <li>8. 신고서 확인</li> <li>9. 신고서 확인</li> <li>10. 신고서 확인</li> <li>11. 신고서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접수결과 확인</li> <li>2. 접수결과 확인</li> <li>3. 접수결과 확인</li> <li>4. 접수결과 확인</li> <li>5. 접수결과 확인</li> <li>6. 접수결과 확인</li> <li>7. 접수결과 확인</li> <li>8. 접수결과 확인</li> <li>9. 접수결과 확인</li> <li>10. 접수결과 확인</li> <li>11. 접수결과 확인</li> </ul>

##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 간편신고 서비스 개편

- 세무서 방문이 많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도입(20년 1월)한 부가가치세 ARS 신고시스템\*을 개편합니다.
- (기존) 소규모 부동산 임대업자(직전기와 임대차내역이 동일)는 국세청 'ARS 신고센터(1544-9944)'에 연결하여,(붙임9)
  - 우편·모바일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미리 입력된 신고내용의 확인만으로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 (추가) 매출·매입내역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도, 기존의 홈택스 전자신고(원클릭)와 모바일 간편신고 외에 ARS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방법) 'ARS 신고센터(1544-9944)'에 연결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번호만으로 인증\* 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ARS신고용 개별인증번호 없이 본인인증절차 간소화

#### | 보이는 ARS 신고서비스 사용방법 (예시 : 무실적자) |

ARS 연결	서비스 선택	인증·접속	신고서 확인·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ARS 연결</li> <li>2. ARS 연결</li> <li>3. ARS 연결</li> <li>4. ARS 연결</li> <li>5. ARS 연결</li> <li>6. ARS 연결</li> <li>7. ARS 연결</li> <li>8. ARS 연결</li> <li>9. ARS 연결</li> <li>10. ARS 연결</li> <li>11. ARS 연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비스 선택</li> <li>2. 서비스 선택</li> <li>3. 서비스 선택</li> <li>4. 서비스 선택</li> <li>5. 서비스 선택</li> <li>6. 서비스 선택</li> <li>7. 서비스 선택</li> <li>8. 서비스 선택</li> <li>9. 서비스 선택</li> <li>10. 서비스 선택</li> <li>11. 서비스 선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증·접속</li> <li>2. 인증·접속</li> <li>3. 인증·접속</li> <li>4. 인증·접속</li> <li>5. 인증·접속</li> <li>6. 인증·접속</li> <li>7. 인증·접속</li> <li>8. 인증·접속</li> <li>9. 인증·접속</li> <li>10. 인증·접속</li> <li>11. 인증·접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고서 확인·제출</li> <li>2. 신고서 확인·제출</li> <li>3. 신고서 확인·제출</li> <li>4. 신고서 확인·제출</li> <li>5. 신고서 확인·제출</li> <li>6. 신고서 확인·제출</li> <li>7. 신고서 확인·제출</li> <li>8. 신고서 확인·제출</li> <li>9. 신고서 확인·제출</li> <li>10. 신고서 확인·제출</li> <li>11. 신고서 확인·제출</li> </ul>

## 홈택스 개선으로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사전 안내

- (신용카드번호 입력 검증)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입력 시 사업용 신용카드를 '그 밖의 신용카드' 항목에 기재할 경우 오류 메시지를 생성하여 중복 기재를 방지합니다.

### < 사업용신용카드 입력오류 메시지 >

신용카드번호 1200-1211-1222-1200는 사업용신용카드입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명세 합계에 기재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 (전자신고 오류 안내 정교화) 전자신고 완료 시, 유형별 오류내용\*과 함께 오류금액, 정상금액, 오류처리 방법을 알림창을 통해 상세내용을 추가하여 안내합니다.

\* 신고서식 간 오류, 신고항목 기재오류 등 219개 유형으로 세분화

### < 신고서 오류내역 조회 개선화면 >

신고서오류내역 조회					
- 메시지유형(오류/경고/안내)에 따른 신고서 제출 가능 여부 안내 - 오류 : 신고서 제출 불가 (신고서 내 반드시 수정해야 할 오류 존재) - 경고, 안내 : 신고서 제출 가능 (신고서 내 재확인 필요한 부분 존재)					
- 신고내용					
과세년월	2020년 07월	신고구분	정기(확정)		
신고서종류	부가가치세 확정(일반) 신고서	신고유형	정기신고		
- 오류내역					
내용검증 오류 수정방법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일반 신고서의 [일반과세방식 세액] 항목의 [정감공제세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 입력 화면의 입력항 차등(정감공제세액)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세액 공제 등) 입력금액을 같은 신고서의 [정감공제세액] 항목에 입력해야 합니다.			
서식명	메시지유형	항목명	오류금액	정상금액	내용검증 오류내역
소규모개인사업자 부...	오류	일반대상 세액	3,981,000	3,552,000	[납부세액 합계 - 정감공제세액]과 다른 오류입니다. ...
일반과세자 부가가...	오류	과세표준금액	1,000,000	10,000,000	과세표준명세의 합계금액과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합...

##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안전한 전자신고 당부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 (신고서 작성) 신고서는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며, 신고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고지원) 다만, 예외적으로 자기작성이 어려운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 신규 사업자 등에 한해 신고지원 예정입니다.
- ※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직원이나 신고도우미의 신고서 대리작성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 직원은 사업자의 신고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응대

## 5. 사전안내 불응자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 강화

-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 특히,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확대하고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니 신고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요 신고내용확인 사례 |

- ①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장을 무상 임대하고 매출신고 누락 [사례1]
- ② 신축 오피스텔 취득시 매입세액 환급 받은 후, 임차인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환급세액 추징 [사례2]
- ③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추출 점검 [사례3]
- ④ 고철 도·소매 사업자가 철·구리 스크랩 거래시 전용계좌를 미사용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사례4]

-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 받은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 \* (조세범처벌법 §3 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 벌금
- 사업자분들께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1**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장을 무상 임대하고 매출신고 누락

[분석 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는 카페를 운영하는 아들 B에게 본인 소유 상가를 무상으로 임대하면서
  -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부가가치세법 제12조)임에도,
    -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
  - 일반적인 용역의 무상공급과 동일하게 과세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 신고 누락한 혐의

[조치 사항]

- 임대인과 임차인의 가족 관계 및 사업내역 등을 분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신고 내역이 없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를 추출한 후,
  - 임차인(특수관계인)의 개업일, 인근 임대차 시세 등을 확인하여 임대인의 부동산 임대용역 신고누락분 점검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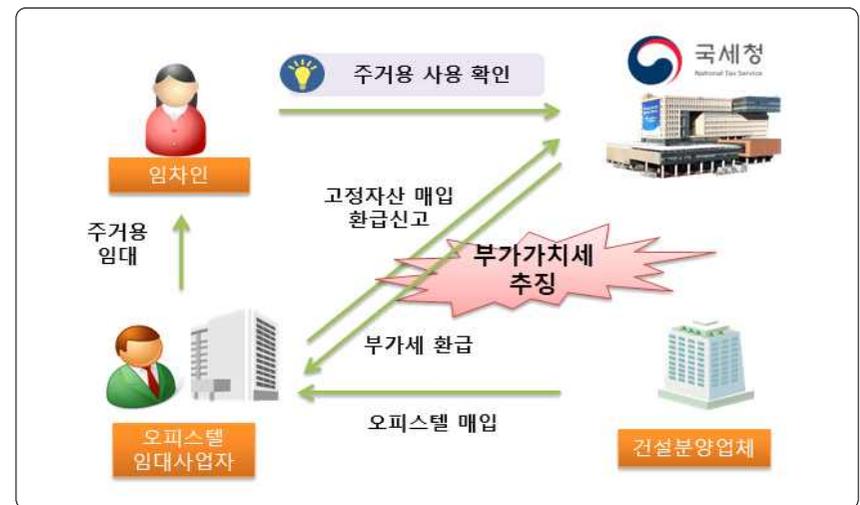
**사례 2** 신축 오피스텔 취득시 매입세액 환급 받은 후 임차인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환급세액 추징

[분석 내용]

-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C는
  - 신축 오피스텔을 구입한 후 구입대금의 10%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임대해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면세인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매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함

[조치 사항]

- 임대사업장 전입세대의 주민등록 내역, 전기 사용내역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주거용 임대로 면세전용한 임대사업자 선정
  - 주거용 임대 사실 및 시기를 확인하여 당초 부당하게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 추징 추진(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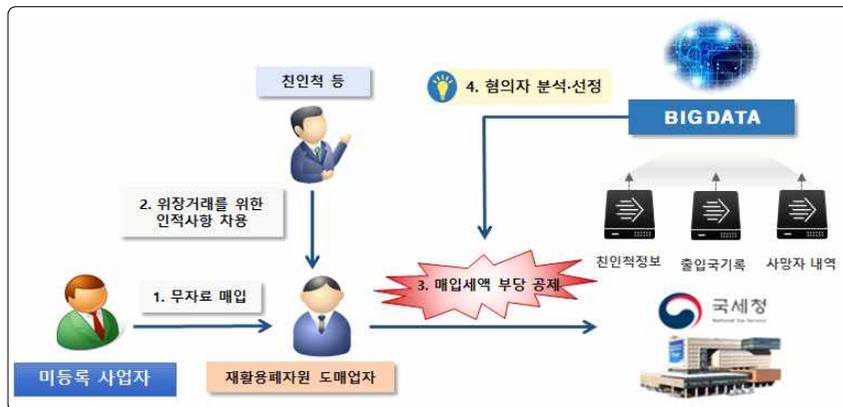
**사례 3**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추출

[분석 내용]

- 사업자 D씨는 재활용폐자원 도매업자로서 미등록 사업자로 부터 고액의 폐자원을 매입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되자,
- 친·인척, 사망자 등의 인적사항을 차용(도용)하여 정상거래로 위장한 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치 사항]

- 친·인척 및 사망자, 해외출국자, 군복무자 등으로부터 고액 매입거래가 있는 부당공제 혐의자를 선정하고,  
- 매입거래자의 소득 수준, 연령, 거주지, 재산 등의 자료를 연계분석하여 고액 탈루혐의자 대상 점검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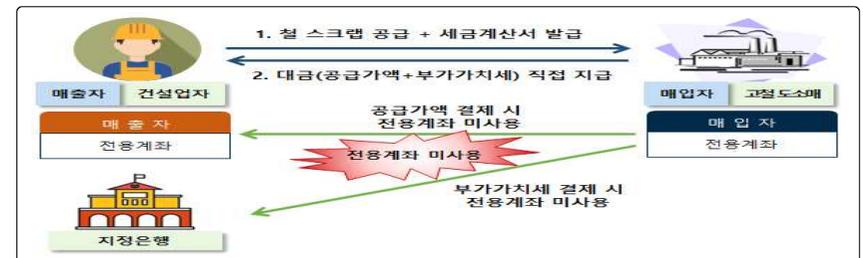
**사례 4** 고철 도·소매 사업자가 철·구리 스크랩 거래시 전용계좌를 미사용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분석 내용]

-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이후 철·구리 스크랩 등 적용대상 품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해야함에도  
-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거래한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분석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조치 사항]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품목이 철·구리 스크랩임에도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거래 추출·점검 추진  
- (업종, 품목명 분석) 고철 도·소매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품목과 전용계좌 거래내역 비교 분석  
- (거래처 전용계좌 사용률 분석) 매출에 대한 전용계좌 입금율이 99% 이상인 사업자의 매입내역을 분석하여 전용계좌 미사용자 추출  
- (전용계좌 이상거래 분석) 전용계좌 입·출금 내역이 한쪽만 존재하거나, 한쪽 거래만 과다한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비교 분석



## 붙임자료

1.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 안내
  - 참고 세무서 수납창구의 「무인수납방식」 운영
3.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4. 코로나19 대응 관련 부가 분야 법령개정 주요 내용
5. 경영애로·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6.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예시)
7.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8. 모바일 신고 이용방법
9.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 신고 안내문
10. 비대면(Untact) 전자신고 도움자료 제공 현황
11. 부가가치세 비대면 상담서비스 및 챗봇 상담서비스
1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문
13. 21년 주요 세법개정 사항

## 붙임 1

##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 ① 계속사업자

-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 의무 없음)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 ○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1.1. ~ 12.31.까지 1년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1. ~ 1.25.까지 신고·납부
- \* 다만, 7.1.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3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 ②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 ③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2. 부가가치세 납부

1.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P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 모든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li> <li>-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li> <li>· (법인) 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li> </ul> </li> </ul> </li> <li>○ 접근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메뉴 선택</li> </ul> </li> <li>○ 이용시간 : 매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8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li> </ul> </li> <li>○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gt; 개인신고안내 &gt; 부가가치세 &gt; 참고자료실</li> <li>※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gt; 개인신고안내 &gt; 부가가치세 &gt; 동영상자료실</li> </ul> </li> </ul>
모바일 신고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 무실적자</li> <li>○ 접근방법 :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 접속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li> </ul> </li> <li>○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gt; 개인신고안내 &gt; 부가가치세 &gt; 참고자료실</li> <li>※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gt; 개인신고안내 &gt; 부가가치세 &gt; 동영상자료실</li> </ul> </li> </ul>
우편신고 · 방문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시간 : (법인) 2021. 1. 25.(월) 18:00까지 (개인) 2021. 2. 25.(목) 18:00까지</li> <li>○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li> </ul>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 모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접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납부'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li> </ul> </li> <li>-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납부' → '세금납부' → '자진납부' 선택</li> </ul> </li> </ul> </li> <li>○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li> <li>○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li> </ul> </li> <li>○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li> </ul> </li> <li>○ 납부시간 : 07:00 ~ 23:30(연중 무휴)</li> </ul>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li> <li>○ 공인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li> <li>○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li> <li>○ 납부시간 : 00:30 ~ 23:30(연중 무휴)</li> </ul>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li> <li>○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li> <li>○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li> <li>○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li> <li>○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li> </ul> </li> <li>○ 납부시간 :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li> </ul>
세무서 (무인수납 창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li> </ul> </li> <li>○ (현금수납창구)* 현금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납집중기간(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등에만 운영</li> </ul> </li> </ul>

**참 고**

**세무서 수납창구의 「무인수납방식」 운영**

- (운영개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수납을 확대하고 세금납부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21.1.1.부터 모든 세무서 수납창구를 무인수납창구로 운영
- 모든 납세자는 무인수납창구에서 모든 세목의 국세를 신용카드로 한도 없이 납부 가능
- (시범운영 성과) '20년에 20개 세무서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무인수납창구 이용률(인원)이 98.9%로 방문 납세자 대부분이 직원과 대면 없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남
- (설치장소) 무인수납창구는 세무서 1층 현관, 민원실 등 납세자 접근성이 좋은 공간에 설치
- (운영방법) 편리한 납부를 위해 고령자 등 부득이한 경우와 납세자 방문이 집중되는 수납집중기간\*에는 현금 수납창구도 병행 운영
  - \* 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무인수납창구  
현장 사진



카드수납기 이용방법

## 카드수납기 이용방법

※ 결제하실 신용카드를 준비하신 후

**01 화면터치**

납부하기 시작

납부를 시작 하시려면  
「납부방식」을 선택(터치)해 주세요!

신용카드 납부시 납부대행수수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납부자가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 납세액의 0.8%, 체크카드 : 납세액의 0.5% 추가 부담)  
※ 납부 후에는 승인 취소 및 환불 개월 수 변경이 불가합니다.

**02 QR코드 인식**

QR코드 인식

납부고지서의 QR코드를 스캐너에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 전자납부번호 입력**

전자납부번호 입력

납부할 세액 외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 카드사 선택 후 카드삽입**

카드사 선택

카드사 선택 후 신용카드를 삽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 할부개월, 유대폰번호 비밀번호 입력 후 카드납부 진행** 터치

카드결제 입력 및 납부

납부 금액, 납부 방법, 납부 일자, 납부 계좌, 납부 계좌 비밀번호, 납부 계좌 비밀번호 확인, 납부 계좌 비밀번호 재입력

**05 카드 영수증 가져가기**

카드영수증 가져가기

신용카드를 IC리더기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붙임 3**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No	구분	제공 항목(총28개)	제공일정	비고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21.1.14.	
2		신용카드 매출	21.1.13.	
3		현금영수증 매출	21.1.1.	
4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21.1.15.	
5		수출실적 내역(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21.1.11.	
6	매입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21.1.14.	
7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21.1.14.	
8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21.1.13.	
9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21.1.1.	
10		현금영수증 매입	21.1.1.	
11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21.1.14.	
12	공제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21.1.1.	
13		재고납부세액	21.1.1.	
14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21.1.1.	
15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21.1.1.	
16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21.1.1.	
17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21.1.1.	
18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21.1.1.	
19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1.1.15.	
20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21.1.14.	
21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21.1.11.	
22		기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21.1.1.
23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신고마감후	
24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21.1.14.	
25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21.1.14.	
26	국고입금세액 정보(세무대리인)		21.1.15.	
27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21.1.15.	
28	음식·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21.1.1.	

**붙임 4**

**코로나19 대응 관련 부가 분야 법령개정 주요 내용**

- ①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조특법§108의4 신설)
- (감면대상)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
    - \*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 (감면세액)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과 간이과세방식(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과의 차이금액(A-B)

A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5%	2. 소매, 도매, 음식점업	10%
* 3. 농·임·어업, 제조, 숙박, 운수, 정보통신업	20%	4. 건설, 그 밖의 서비스업, 기타업종	30%

- (신청방법) 세액감면 신청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
  - (적용기간) 시행일(20.3.23.)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20년 한시적으로 적용(부칙§4)
- ②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적 상향(조특법§108의5 신설)
- (개정내용) 연매출 3천만 원 이상 4천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해 '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
  - (적용대상) 다음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간이과세자
    - ①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 원 이상 4천800만 원 미만일 것
    - ②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아닐 것
      - \*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 (적용기간) '20년 1~12월 과세기간(1년) 한시 적용(부칙§5)
    - \* 시행일('20.3.23.)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적용

**붙임 5**

**경영애로 · 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 **주요 내용**

-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신청시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

□ **지원 대상**

- (경영 애로) 고용위기지역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소재한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구 분	지정일	지정기간 만료일	지정 지역	사유
고용위기지역 (고용노동부 고시)	'18.4.5.	'20.12.31.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조선업 불황
	'18.5.4.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산업통상자원부)	'18.4.5.	'22.4.4.	(전북) 군산시	
	'18.5.29.	'21.5.28.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해남군, 영암군, 목포시	

- (재난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선포일	재난 지역	사유
'18.09.17.	(전남) 완도 보길면, (경남) 함양읍, 병곡면 (경기) 연천 신서면, 중면, 왕징면, 장남면	태풍
'18.10.24.	(경북) 영덕군, 경주시 외동, 양북면, (경남) 거제시 일운, 남부면 (전남) 고흥군 동일면, 완도군 소안면, 청산면	태풍
'19.04.06.	(강원)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고성군, 인제군	산불
'19.09.20.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흑산면	태풍
'19.10.10.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 영덕군	산불
'19.10.17.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 성주군, (전남) 진도군 의신면 (강원) 강릉시 강동면, 옥계면, 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태풍
'20.03.15.	(대구) 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질병

- (추가 연장)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 (최초 연장 3개월 이후 1개월씩)에서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추가 연장**

**붙임 6**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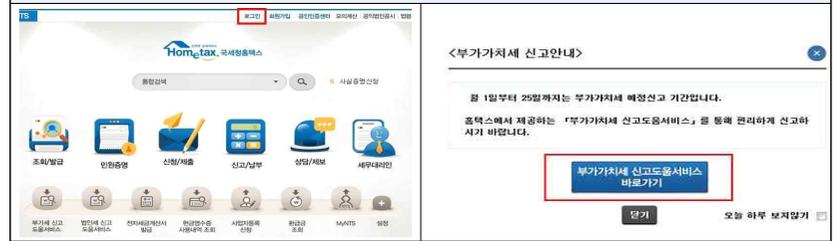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매출	○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
	○ 직원이나 친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을 신고 누락
	○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 수정 세금계산서 잘못 작성하는 사례
	○ 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발급 금액을 신고 누락 ○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매입	○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
	○ 사업용 신용카드와 그 밖의 신용카드를 중복으로 잘못 공제
○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정기 신고 시 중복으로 잘못 신고 ○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안내	
기타	○ 과세기간(6개월) 동안 사업자 기준(모든 개인 사업장 합산) 총 공급가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감면을 신청하는 사례 안내
	○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 보다 과다하게 공제
	○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 보다 과다하게 공제 ○ 면세비율 증감에 따른 납부세액 재계산 안내

업종별·항목별 주요 안내자료	
건설업	○ 산재보험에 가입된 건설공사 현황자료 성실신고 안내
건설업	○ 인테리어사업자 과세표준 대비 세금계산서 매출비율 분석
건설업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아파트 시설통사 자료
건설업	○ 태양광발전기 설치사업자 토지공사 등 성실신고 안내
전문서비스업	○ 치과 병의원 미백 등 과세 치료항목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전문서비스업	○ 건축사 감리용역 과세매출 성실신고 안내
전문서비스업	○ 성형외과 지역별 평균 신용카드 매출(건당) 분석자료 안내
임대업	○ 특수관계자 간 무상임대 등 성실신고 안내
임대업	○ 임차인 확정일자권리부 분석자료 안내
제조업	○ 비대면 소비 증가 관련 가공식품 제조업 성실신고 안내
운수업	○ 운수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이외 매입 과다자료 안내
숙박업	○ 숙박어플, 배달어플 등 운영사업자에 수수료 지급한 내역 안내
숙박업	○ 유명지역 '한달 살기' 또는 '1년 살기'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운영과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서비스업	○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대상 대행수수료, 자가 사용 목적 수입물품 판매 등 매출누락 방지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업	○ 미용실 내부기준에 따른 봉사료 지급액 매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업	○ 배달대행 가맹사업자 수수료 지급내역 안내
서비스업	○ 스크린야구, 스크린골프 운영 사업자 매출 성실신고 안내
도.소매업	○ 오픈마켓 등 실사업자 판매(결제)대행자료 안내
도.소매업	○ 제로페이(zeropay)를 통한 매출액(결제금액) 안내
도.소매업	○ 주유소 사업자 면세유 매출액 안내
도.소매업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환전자료 등 매출 성실신고 안내
도.소매업	○ 장애인보장구 보조금 지급 내역 안내
공통	○ 접대상개인적 사용 등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성실신고 안내
공통	○ 통산 부가가치율 저조 사업자 신고 분석자료 안내
공통	○ 귀금속 등 기념품 취득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공통	○ 기타 현금매출 신고내역이 없는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공통	○ 형사소송관련 업무무관 매입세금계산서 성실신고 안내
공통	○ 매입자납부특례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 붙임 7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 □ 원스톱 조회서비스

#### 01. 홈택스 접속 후 알림창 생성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바로가기' 클릭



### □ 일반 접근경로 (납세자)

#### 01.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클릭 -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클릭



#### 02.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 ○ 기본사항 Tab

개발분석자료	기본사항	과거신고내용분석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b>● 기본사항</b>				
신고연내 자료해 대한 문법	중로 세무서 개인납세과	조사관 (☎ 02-760-9393)		
상호(법인명)	성영(대표자)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중 역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	
<b>●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체크리스트</b>				
확인할 내용				
배출	전자세금계산서 및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 확인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 확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핀테크 결제 등으로 받은 결제대금 확인			
	(영세출) 수출물관내역,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관련 매출 확인			
	(첨부서류)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영세출 적용 위한 필수서류 준비			
(결합) 과 면세 결합사업자 과세매출 적정 확인				

## ○ 세법개정내용 Tab

개발분석자료	기본사항	과거신고내용분석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b>● 2021년 주요 세법령 개정사항</b>				
구분		개정내용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기준금액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과세유증장소 및 부통산입대입 제외)			
간이과세자 납부유무면제 기준금액 상향	기준금액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간이과세자 세무계산서 발급유무 부과	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가 공제받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배입세액공제 대상	간이과세자 중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조정	일반간이과세자 통합 1.0%(21.12.31.까지 1.3%)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등 면제배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간이과세자 세무계산서 등 가산세 규정 보완	세무계산서 관련 가산세 추가, 결정사 공제받은 세무계산서등 가산세 0.5%로 인하			
간이과세자 세무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세무계산서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의 0.5%로 변경			
간이과세자 확정부과간 납부세액 신고사유 확대	세무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신고 및 매출처별 세무계산서합계표 제출			

## ○ 세법해석사례 Tab

개발분석자료	기본사항	과거신고내용분석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b>● 주요세법 해석사례 32건</b>				
업종	분야	해석 사례		
공동	과세대상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사업지역 지상 건물에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해당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시행자가 해당 건물의 임차인에게 영합승설 및 시설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서민-2017-법률해석부가-0891, 2018.01.12)		
공동	과세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촉진사업(이하 "사업시행자")가 부통산입대입을 영위한 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매도상각률 행사하여 사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서민-2020-법률해석부가-0001, 2020.02.05)		
공동	과세대상	국내여행자 "간이" 국외여행자 "상"로부터 통행료 확인인서, 교통비용 확인서 등 국내에서 국외여행자 "출"에 관계 없이 "출"을 해당 선하유류권을 국외여행자 "내"에 "간"으로 "상"으로 인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통행료의 이월이 "상"로부터 "내"에게 귀속된 인도는 경우에 "간"과 "출"의 선하유류권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기문-2019-법률해석부가-0445, 2019.05.31)		
건설업	과세대상	국민주채유보 이월의 공동주채를 신출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전체 세대를 발주한 확정으로 공급받기로 시공사와 임대보증금계약을 체결하여 발주자를 가설 등으로 변경하기 위해 공급받은 층은 주채건설 중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채건설 중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주채건설 중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54, 2018.01.15)		
공동	사업자등록	개인이 기존 부통산입대입의 공동사업장에 새로운 출자원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출자가격, 출자지분, 순이익분배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한 출자원계약을 체결(변경)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및 출자지분 분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서민-2019-법률해석부가-0192, 2019.06.11)		
교육업	과면세구분	「대한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대한학교(이하 "비인가대한학교")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학정소년 지원 조례」의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립을 신고하고 학생들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조례에 따라 시설 및 설비, 교육과정, 장학 등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인가 지도·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비인가대한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인가 지도·감독을 받는지 여부는 해당 조례의 개정내용 및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살필(서민-2019-법률해석부가-159, 2019.05.26)		

## ○ 과거 신고내용분석 Tab



○ [예시] 부동산임대업종 일반과세 사업자

### 홈택스앱 접속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선택

### 기본정보 입력

### 입력서식 선택

### 매출 입력 세금계산서

### 매출입력 임대공급가액명세서(1)

### 과세표준 명세 작성

### 전자세액공제 입력

### 접수결과 확인

### 매출입력 임대공급가액명세서(2)

### 매입 입력하기 세금계산서

### 납부환급할 세액 확인 후 신고서입력 완료

### 기타 매출분 입력

### 매입 입력하기 신용카드

### 신고서 제출

### 과세표준 명세 작성

### 전자세액공제 입력

### 접수결과 확인

## 보이는 ARS 신고 안내문

-2020년 확정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전화(1544-9944)로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수 있으니 다음 안내에 따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직접기와 임대차 내용이 동일한 간이 부동산 임대사업자

**신고방법**

☎ 1544-9944로 전화 → 보이는 ARS 선택 →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 2번 부동산 임대 신고 선택 → 사업자번호 입력 → **인증번호입력**  
 (동봉된 신고서 우측 상단) → 1번 신고서 작성 → 1번 신고서 제출

• 음성 ARS도 신고순서는 동일하오니 음성안내에 따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내용	접속경로(방법)
신고안내 매뉴얼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매뉴얼(게시번호 33번)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 소책자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매뉴얼(게시번호 31번)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6종) * 부동산임대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화물·운수업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부가가치세)」 - 「전자신고방법 동영상 따라하기」 버튼 클릭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에 게시된 업종별 동영상 확인 유튜브(Youtube) 접속 후 검색창 「국세청 유튜브」 조회 -  클릭
신고도움서비스	모바일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방법 동영상 따라하기」 터치
	(납세자용)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클릭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접속 후 「세무대리인」 - 「수입납세자 정보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과세기간 선택 후 「세무대리인 일괄조회」 클릭
신고안내문	홈택스 접속 후 「My 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에서 직접 조회
신고서 작성사례 책자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매뉴얼(게시번호 34번)
기한연장·징수유예 신청	홈택스 접속 후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카드뉴스	국세청 공식 블로그(아름다운 稅상),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스토리에 게시

□ 부가가치세 비대면 상담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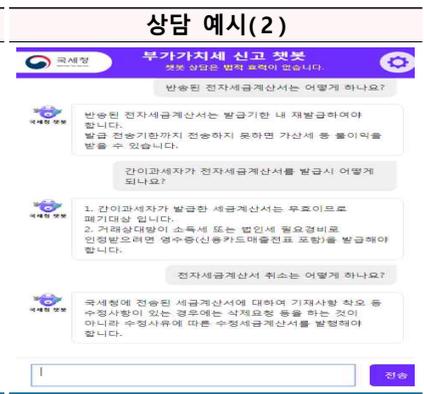
- 국세상담센터(☎126)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상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상담원 연결 없이도**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주요 내용**

구분	경로	주요내용
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	국세청 누리집 → 국세상담센터 → 세법 상담정보 → 부가가치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가가치세 관련 자주묻는 상담사례를 엄선하여 법령근거와 함께 검색할 수 있는 상담도우미 프로그램</li> <li>- 자주묻는 Q&amp;A : 12개 항목, 416개 수록</li> <li>&lt;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 상담분야&gt;</li> <li>① 신고관련 주요 질의사항 ② 사업자등록 ③ 과세대상 ④ 공급시기 ⑤ 세금계산서 ⑥ 과세표준 ⑦ 매출세액 ⑧ 면세/영세율 ⑨ 가산세 ⑩ 간이과세자 ⑪ 정점 사례별 판단 ⑫ 납부의무 감면과 면제(2020년 귀속 한정)</li> </ul>
자주묻는 Q&A 동영상	국세청 유튜브 국세청 누리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업종별로 사업자가 자주묻는 질문·답변을 '카툰' 형식의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사전 안내(6편)</li> <li>- VAT 신고방법, 임대, 소매, 음식, 운수, 전자상거래업</li> </ul>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사항 안내	국세청 유튜브 국세청 카드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관련 세정지원 사항을 동영상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하여 안내</li> <li>- 소규모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제도</li> <li>-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확대</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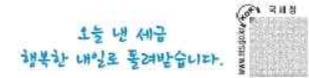
□ 부가가치세 챗봇 상담서비스

※ 접속경로 :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 「부가세 신고 챗봇」 클릭

| 챗봇 상담 사례 |

상담 예시(1)	상담 예시(2)
 <p>문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질문이 여러개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p> <p>2기 예정 신고납부기간은 10월 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p>	 <p>반영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시 어떻게 되나요? 1.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무효이므로 폐기대상입니다. 2. 거래상대방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영수증(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p> <p>국세청에 전송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기재사항 착오 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삭제요청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사유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p>

< 앞 면 >



신고 문의:

###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가 유형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납부기간** 2021년 1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모든 개인사업자의 신고·납부 기한이 1개월 연장(2월 25일까지)됩니다.  
※ 사업 실적이 없어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는 뒷면 '전자신고 방법' 참조)

**과세기간**  
개인사업자 2020년 7월 ~ 12월 까지의 사업 실적  
법인사업자 2020년 10월 ~ 12월 까지의 사업 실적

**신고 방법**  
전자신고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로 신고 (뒷면 '전자신고 방법' 참조)  
※ 직접 신고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전자신고 동영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PC 접근경로) ①「국세청」, 또는 ②「홈택스」  
①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 자료실  
②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 방법 동영상상 따라하기 (모바일 접근경로) ①「국세청」, 또는 ②Youtube > 검색창에 「국세청 유튜브」 조회 > 클릭  
**우편신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우편 발송  
※ 직접 신고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업종별 서면신고 사례 및 서식을** 게시하였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전자신고** 국세상담센터 ☎126 번 (1번 → 3번), 09:00 ~ 18:00  
**기타신고** 뒷면에 기재된 세무서 상담전화

2021년 1월  
**세무서장 (관인생략)**

### 01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운영시간** • 1. 1. ~ 2. 25. (공휴일 포함), 매일 06:00 ~ 24:00

**신고 방법**

- 인터넷 「홈택스」 검색 또는 「모바일 홈택스앱」 실행
- ①로그인 ②신고/납부 ③부가가치세 ④일반과세자 정기신고
- ※ 이번 신고부터 일반과세자도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신고 가능  
(단, 음식·숙박업, 민세·영세용 해당 사업자, 재할용계자원 공제 신고자, 사업장현황명세서 제출 대상자는 제외)

**무실적 신고**

- (모바일)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간편 신고
- ※ 접근방법: ①모바일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②신고/납부 ③부가가치세 ④부가가치세 간편신고 ⑤무실적 신고 ⑥신고서 제출 ⑦접수증 확인
- (보이는 ARS) ☎ 1544 - 9944로 전화
- ※ 접근방법: ①보이는ARS 선택 ②부가가치세 신고 ③무실적 신고 ④사업자번호 입력 ⑤주민등록번호 입력 ⑥신고서 작성 ⑦신고서 제출

### 02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홈택스-모바일** 07:00~23:30 • 모바일 또는 PC로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국세납부

**신용카드** 00:30~23:30 •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로그인 이용

※ 로그인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정납부 → 결제수단 중 신용카드 선택

### 03 신고 전에 확인해 두면 편리한 사항

**홈택스 미리재용 서비스**

•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에서 조회 가능한 주요 항목

주요 미리재용 서비스 제공항목	제출 예정일
① 예정고지·예정신고이환당세액, 환급영수증 매출·매입,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1. 1.
②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신용카드 매입	1. 12.
③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1. 13.

**부동산임대**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2020년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 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자율 1.6%]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 ※ 최종적으로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납부세액이 경감됩니다.
- (대상) 과세기간(계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사업자  
(단,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형장소는 제외)
- (안내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 안내 > 개인신고 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31번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 04 기한연장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붙임 13 21년 주요 세법개정 사항

구 분	세부 내용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기준금액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과세유형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제외)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상향	기준금액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가 공제받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매입세액공제 대상	간이과세자 중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 조정	일반·간이과세자 통합 1.0%(21.12.31.까지 1.3%)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등의 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규정 보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추가,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 0.5%로 인하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의 0.5%로 변경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 신고사유 확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신고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간이과세자 확정신고서 제출서류 추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 명확화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주소지·거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추가	한국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추가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 목적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건설용역)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환급 추정사유 보완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세금계산서 발급
소규모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신설	직전기(6개월)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